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지선**·최려나***·한기명****

I 알기 쉬운 개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모를 만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한다. 미성년자인 수용자 자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접견 횟수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된 접견 경험은 수용자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 및 수용자의 재범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만 14~18세의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가 수감된 부모를 만나는 경험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은 첫 접견 시에 이전의 감정과 관계없이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이 반가웠다고 답하였다. 접견 방식에 따른 경험이 달랐는데 일반접견은 공간과 시간적 제약으로 불편했으나, 가족접견실에서는 가림막이 없어 편안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부모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스마트접견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신접견은 개인적인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접견 시간의 연장,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접견 및 가족접견실 이용 기회 확대, 미성년자인 본인과 부모 둘만의 접견 기회 확대,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접견 예약 신청의 유연함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21년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luck_17@naver.com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투 고 일 / 2021. 12. 6.

심 사 일 / 2022. 1. 25.

심사완료일 / 2022. 2. 10.

DOI/10.14816/sky.2022.33.1.27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한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감된 부모를 둔 만 14~18세의 청소년 자녀로서 부모와 접견 경험이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사례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수용자 자녀의 경험을 관통하는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수용자 자녀는 처음 부모를 접견했을 때 이전의 감정과 관계없이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이 반갑고 눈물이 났다고 답했다. 일반접견 시 공간과 시간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경험했으나, 가족접견실에서는 일반접견과 다르게 가림막이 없는 편안한 환경과 시간적 여유로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화상전화를 통한 스마트접견을 통해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많았으며, 서신접견은 개인적인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현재 수감된 부모와의 관계는 그저 낯아선 사람, 가깝고도 먼 사이, 꾸준한 접견을 통해 매우 친밀한 사이로 범주화되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서신접견을 포함하여 접견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접견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바탕으로 접견 시간의 연장,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나고 싶음, 가족접견실 이용 기회 확대, 미성년 자녀와 부모 둘만의 접견 기회 확대,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접견 예약 신청 방식의 유연함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수용자 자녀 당사자들의 아동 권리 측면에서 접견 과정 중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수용자 자녀, 부모 수감, 접견, 가족접견, 부모 관계

I. 서 론

『아동복지법』에서는 기본이념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 부모의 배경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는 모든 아동이 스스로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의 일반토론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사법절차, 법 집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고(OHCHR, 2011),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과 교도소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권고하였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20). 그 결과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하여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법무부, 2020), 2019년에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3조¹⁾ 2항을 통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법률상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에 연간 54,000명으로 추산되는 부모를 교도소에 보내고 남겨진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수용자의 특별한 사유²⁾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인 수용자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수용자 자녀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3.8%만이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또한 접견 횟수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 2017), 자녀와 실제 접견을 한 경우는 29.1%였고, 신연희(2016)의 연구에서도 26.8%만이 접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한된 접견 경험은 장기간 부모의 부재 및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한 수용자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및 오해와 불안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진다(최경옥, 2017).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 붕괴는 부모가 출소한 이후의 가족 내 관계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용자 부모와 아동과의 접견의 부재 및 단절은 재범 예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선영, 신연희, 2012).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이 접견금지의 사유가 됨.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및 지침(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ance)에서는 아동이 수감된 부모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아동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기적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면회를 대신하여 통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와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Quaker United Nations Office, 2015).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 자녀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국내 현행 접견제도에서 국내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접견 경험을 이해하고 접견이 수용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접견 경험 중에 나타나는 수용자 자녀들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아동권리 및 수용자의 인권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접견 종류와 지원

접견은 수감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및 지침의 권고(Quaker United Nations Office, 2015)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반접견’,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³⁾, ‘화상접견’⁴⁾, ‘스마트접견’⁵⁾ 등을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2021). 또한 법무부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 수용자 가족의 관계 유지 및 회복을 목적으로 ‘가족 만남의 집’⁶⁾, ‘가족만남의 날’⁷⁾, ‘가족사랑캠프’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2021). 이 중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서 포용할 수 있는 접견방식은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라 할 수 있다(Poehlmann, Dallaire, Loper & Shear, 2010; Poehlmann-Tynan & Pritzl, 2019).

3)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 일반 가정의 거실과 비슷하게 꾸며진 공간인 가족접견실을 일정 시간(2시간 내외) 동안 1명의 수용자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교정시설의 인근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으로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와 화면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접견 방식임.

5) 민원인(수용자 가족, 지인 등)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임.

6) 가족만남의 집: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교정시설 주변 밖에 일반가정집과 유사한 욕실, 침실, 부엌 등이 갖춰진 시설을 제공하여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할 수 있음.

7) 가족만남의 날: 가족구성원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8) 가족사랑캠프: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각 교정시설에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관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국내에서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과 ‘세진회’가 있으며, 가족생활의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움(2021)은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 지원(동행접견, 교통비 지원 등) 뿐만 아니라 수용자 자녀가 삭막한 환경에서 접견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자 국내 최초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및 매뉴얼 배포를 시작하였다. 국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은 세움이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한 4개소를 포함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도소에 각 1실이 마련되어있으며, 하루에 최대 2가정만 면회가 가능하다(세움, 2021).

2. 수용자 및 가족의 접견

일부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접견이 수용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는 수감되어 있는 부모와의 접견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수감 기간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수용자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접견이 수용자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접견은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 걱정과 그리움, 가족들의 안정에 대한 우려,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감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출소 이후를 준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연희, 2015). 이윤호와 김순석(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의 서신 교환 및 면회 등과 같은 접촉이 많을수록 징벌 여부, 교육훈련 태도, 수행 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견은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Arditti, 2012). 긍정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접견의 효과는 접견 경험의 질에 달려 있다. Beckmeyer와 Arditti (201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잦은 접견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접견 경험이고, 접견 중 경험하는 다양한 불편함과 문제점은 오히려 수용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도소의 위치, 불편한 접견실 환경, 아동 비친화적인 접견 규칙 등이 접견에 있어 큰 장애로 보고되기도 하였다(Mumola, 2000; Krisberg & Temin, 2001). 또한 접견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는 교정 직원의 가혹한 대우, 사생활 보호 부족, 오랜 기다림, 보안 절차 등으로 나타났다(Arditti, 2003).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나 재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에 긍정적인 부모

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 접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아동과 수감된 부모를 연결하는 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Skora Horgan & Poehlmann-Tynan, 2020).

2) 접견이 수용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수감된 부모와 접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외상성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아동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Davies, Brazell, Vigne & Shollenberger, 2008). 긍정적인 접견 경험은 부모의 수용 동안 건강한 아동 발달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Poehlmann et al., 2010).

가림막이 없는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부모를 접견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 분노와 소외감 감소(Shlafer & Poehlmann, 2010), 자존감 증가(Landreth & Lobaugh, 1998),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Schubert, Duininck & Shlafer, 2016)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림막이 설치된 곳에서 부모를 만나는 일반접견을 한 자녀는 서신이나 전화접견을 한 자녀보다 불안, 금단, 우울증 등의 문제가 더 자주 나타났다(Dallaire et al., 2015).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국내 연구는 최경옥과 이경림(2018)의 수용자 자녀 6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수감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와 14~27세의 수용자 자녀 17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건으로 받은 충격과 부모와의 관계, 현재 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면접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7)를 실시한 연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과 특히 국내에 가족접견실이 도입된 이후 수용자 자녀의 경험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수감 후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는 경험과 그 관계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고, 아동 당사자 관점에서 접견 과정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아동의 권리적 관점에서의 이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만 18세 미만의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 과정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은 일부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나(최경옥, 이경림, 2018),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는 과정이 어떠한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변화 혹은 적응과정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감된 부모와 접견 경험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주변의 다른 체계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지며 연구의 목적을 최대화해주는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Stake, 2000).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이라는 특정 상황을 중심으로 분명한 시간적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아동 청소년들과 달리 수감된 부모, 교정시설 등이 관계망으로 얽혀있는 공간적 경계 속에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 경험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 자녀의 ‘수감된 부모와의 접견 경험’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접견 경험이라는 특정 현상을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례 간 통합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경험의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수감된 부모와의 접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1)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2)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3) 부모를 접견한 경험이 있고, 4)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5) 1:1 면담에 응답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청소년이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세움’을 통해 수용자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수감 기간, 지역, 접견 경험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간 이질성(heterogeneity)이 확보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구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청소년 9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Yin, 2015).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수감 관련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남성이 4명, 여성이 5명이었으며, 나이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충남지역 거주자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 중이다.⁹⁾ 연구참여자 9명 중 3명은 부와 모 모두 수감되었으며, 어머니만 수감된 경우가 2명, 아버지만 수감된 경우가 4명이다. 부모의 수감 시기는 아동이 4세~15세였을 때이며, 수감 경과 기간도 4년~12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수감된 이유와 형량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수감

9) 해당 단체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의 접견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수용자 자녀는 일반적인 모집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고,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원단체의 도움 없이는 접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정보의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모든 참여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접견 경험 1회인 사례 C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부모를 접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9명 중 5명은 가족접견실 이용 경험이 없었다. 스마트접견은 부모의 추가 수사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경우와 참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의 두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두 사례였고, 온라인 서신을 포함하여 서신 접견은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나이	수감 부모	수감 당시 나이	수감 경과기간	주 양육자	전체 접견 횟수 (가족접견실 이용)
A	남	15	부	11세	4년	할머니, 삼촌	2~3주에 1번 (가족접견실 X)
B	남	17	부, 모	13세(모) 15세(부)	4년	할머니	총 2~3번 (가족접견실 X)
C	여	17	부	12세	5년	엄마	1회 (가족접견실 1회)
D	남	16	모	11세	5년	조부모	50회 이상 (가족접견실 1회)
E	남	17	부	12세	5년	엄마	10회 (가족접견실 X)
F	여	14	모	6세	8년	شط터	총 2~3번 (가족접견실 1회)
G	여	17	부	9세	8년	조부모	50회 이상 (가족접견실 X)
H	여	16	부, 모	6세	10년	언니, 고모	50회 이상 (가족접견실 X)
I	여	16	부, 모	4세	12년	할머니, 언니	50회 이상 (부모 각각 매년1회)

3. 자료수집

각 사례별로 약 60분~90분 동안의 1회의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1년 7월에 약 2주에 걸쳐 참여자들의 집 근처 스터디 카페의 방음이 되는 별도의 세미나실에서 실시하였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사전 동의 하에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면담이 종료된 후에 참여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 비밀

보장 유지에 대한 사항과 심층면담 자료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 참여 여부가 향후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의 지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면담 참여 후에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 시에 전문 상담을 연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의 편견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와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부모의 수감 이후 처음 접견은 어떠했는지, 일반접견, 가족접견, 스마트접견, 서신접견 경험은 어땠는지, 미성년 아동으로서 접견 과정 중에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는지,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접견과 관련해서 무엇이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좁혀갔다. 준비된 질문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적절한 프롬프트 질문을 사용하여 응답을 격려했다. 질적 연구에 대해 훈련을 받은 연구원 두 명이 동석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절차 및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4. 자료분석

녹음된 심층 면담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필사되었고, 녹음내용과 녹취록을 대조하는 검토과정을 거치며 누락과 오기를 방지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인 사례 내 및 사례 간 분석(Creswell, 2016)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사례 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요약하고, 발견된 이슈와 개념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기술하였다. 사례 간 분석은 사례들을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읽기와 메모, 기술, 분류, 해석 과정을 통한 주제분석(Braun & Clarke, 2006)을 진행하였다. 코드는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유사한 개념으로 통합한 후, 발견된 개념과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비슷한 주제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일관성을 얻기 위해 3명의 연구자가 면담 중 작성한 노트와 자료 분석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 기록을 활용하였으며, 타당성과 삼각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동료 연구자 검토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교정 분야 전문가와 사회복지전공 교수 각 1인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자료 분석의 중립성, 확증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유지하는 노력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사례 내 분석 및 기술을 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내용은 생략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슈를 분류하고, 면담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인 사례 간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주제 분석 방법으로 개념과 범주화를 통해 사례들을 통합하는 대주제로 수용자 자녀들의 부모 접견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 접견에 관해 바라는 것들로 발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간 공통 주제

대주제	범주	개념
접견 경험	처음 부모를 접견했을 때의 마음	반가움
		눈물
	일반접견	유리가 가로막혀 있어 답답함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
		마이크로 대화해야 해서 불편함
	가족접견실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있음
		시간적 여유로움으로 편안함
		여전한 아쉬움
	가족 사랑 캠프	평범한 가족이 된 것 같음
	스마트접견	꾸준히 이용함
서신 접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	
	관심 표현인 부모의 답장	
현재 부모와의 관계	부모 자식 사이	낳아준 사람
	어색한 사이	가깝고도 먼 관계
	친밀한 사이	꾸준한 접견을 통해 매우 친밀한 관계
접견 과정에 바라는 것	만족스러운 만남	접견 시간의 연장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나고 싶음
		가족접견실 기회 확대
		둘만의 접견 기회
	물리적 환경 변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예약방식의 변화	접견 예약 신청 방식의 유연함	

1. 접견 경험

1) 처음 부모를 접견했을 때의 마음

부모의 수감 이후 3년이 지나고 처음 접견한 사례 B와 C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접견을 하였다. 첫 접견은 다른 가족들이 권유로 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접견 동기가 어떠한지 보고 싶었던 부모를 다시 만나 반갑고 좋았다고 하였으며, 거의 모든 참여자가 울었거나 눈물이 나는 것을 참았다고 응답했다.

“제가 울 줄은 몰랐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사례 C, 여, 18세)

“그때는 한 2, 3년 만에 엄마 보는 거니까 그냥 좋기만 했어요.” (사례 B, 남, 18세)

“처음 만나러 왔을 때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제가 알고 나서부터도 그 뒤로 편지도 안 쓰고 그냥 안 갔다가 강제로 갔거든요. 저는 딱히 되게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되게 울더라고요 그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리웠다?” (사례 A, 남, 16세)

“어쩔 수 없이 간 거였어요. 싫었어요. 그 옷 입으니까. 처음에는 울다가 얘기 못하고 왔어요. 그 뒤로 맨날 가고 그랬어요. (문: 할아버지는 왜 매일 가자고 하셨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좋아요. (문: 익숙해진 건가요?) 네, 보고 싶으니까. (사례 D, 남, 17세)

2) 일반접견

1회의 가족접견실 경험만 있는 사례 C 참여자를 제외하고 8명의 참여자는 모두 일반접견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접견 경험은 ‘우리가 가로막혀 있어 답답함’,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 ‘마이크로 대화해야 해서 불편함’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부정적 경험으로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1) 우리가 가로막혀 있어 답답함

“막힌 그거는 되게 답답하고. 이게 진짜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가지고 이걸 말을 해야 되어서 답답해서...” (사례 A, 남, 16세)

“우리창 너머로 처음 (접견)해봤어요. 전화기로. 그래서 썩 좋지는 않았어요.” (사례 F, 여, 15세)

(2)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

“이게 10분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막상 가면 진짜 약간 체감 시간 5분 정도 그 정도여가지고 엄청 빨리 끝나거든요. 딱 이제 재미있어질 때쯤 딱 진짜, 딱 말할 때쯤 그때 딱 끊어버려 가지고.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사례 A, 남, 16세)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았어요” (사례 C, 여, 18세)

“처음 접견을 갔는데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거기 5분 맞춰져 있는 타이머에다가 마이크. 아마 접견 한 번 할 때 10분인가 5분인가 아마 그 정도인데 가서 (중략) 5분이 지나고 그냥 소리가 푹 끊겨요. 그리고 약간 노래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끝났다고.” (사례 E, 남, 18세)

(3) 마이크로 대화해야 해서 불편함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마이크가 딱 꺼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돼서.” (사례 H, 여, 17세)

“좀 말이 잘 안 들려서 불편하기도 했고” (사례 B, 남, 18세)

3) 가족접견실

9명의 참여자 중 4명은 가족접견실 이용 경험이 있었다. 대부분 한 시간 정도 부모를 만날 수 있었지만, 길게는 4시간 동안 만난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 일반접견을 해봤던 참여자는 일반접견에 비해서 유리로 가로막히지 않은 공간에서 부모를 안아보거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편안했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인원수가 많고, 일반접견 경험이 없었던 사례 C의 경우는 부모와 만나는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고 응답했다.

(1)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있음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보고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접견할 때 유리창이 있는 것보다 그런 곳이 더 편해요. 저는 엄마가 평상복 입어서 더 좋았어요.” (사례 F, 여, 15세)

“이 유리로 보면 엄마가 되게 살 찐 것 같았는데. 근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막 TV에서는 요즘 막 좋아졌다고 거기가. 근데 잘 모르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사례 D, 남, 17세)

“가족 접견실 그때는 한 시간이었나 그렇게 있을 수 있었으니까 밥 먹으면서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듣고 했죠” (사례 A, 남, 16세)

(2) 시간적 여유로움으로 편안함

“당연히 직접 만나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또 그 화상 통화 너무 짧잖아요. 짧은데 이걸 막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길고” (사례 F, 여, 15세)

“가족 접견실에서는 4시간 정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진짜 많이 좋았어요.” (사례 I, 여, 17세)

(3) 여전한 아쉬움

3년 만에 처음 만난 아버지와 네 명의 자녀가 함께 만나는 가족접견은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연구참여자에게는 그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졌다.

“같이 식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 시간이 짧았어요.” (사례 C, 여, 18세)

4) 가족 사랑 캠프

법무부에서 가족관계의 유지 및 회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도소 내에서의 가족사랑캠프는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이었고, 평범한 가족으로 수련회에 참여한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였다.

“저랑 언니랑 캠프 참여했었는데, 제가 한 5학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수용자 가족들도 오셔가지고 진짜 다른 가족들끼리 모인 것처럼 게임하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사례 I, 여, 17세)

5) 스마트접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견이 어려워져서 영상통화를 통한 스마트접견을 하고 있었다. 스마트접견이 가능한 참여자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접견도 제가 신청하거든요. 1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한 2년 됐나 1년 그렇게.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20분씩이거든요. 크면 진짜 가족들이랑 만날 기회도 얼마 없잖아요.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면. 그냥 가족들처럼 전화도 하고.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사례 I, 여, 17세)

“토요일에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스마트) 접견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사례 G, 여, 18세)

6) 서신접견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서신접견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신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서신은 가족 여러 명과 동시에 부모를 접견했을 때보다 좀 더 개인적인 주제로, 시간적 제한 없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부모의 지속적인 답장은 연구참여자를 향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서신접견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대면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의 횟수보다도 수감된 부모와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

“옛날에는 되게 자주 썼던 거 같은데. 일주일에 세 번? 오히려 뭐가. 뭔가를 말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 당장 내 옆에 있고 어느 정도 뭘 알고 있고 그런 사람보다는 뭐가 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오히려 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례 C, 여, 18세)

“하루에 한 번씩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거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말해요 그리 밥 뭐 먹고 약간 집 오는데 누구랑 같이 걸어서 왔고, 이런 것도 다 말해요.” (사례 H, 여, 17세)

(2) 관심 표현인 부모의 답장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매들 각자에게 답장을 주세요. 제 생일 때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엄청 잘 그리셔서 놀랐어요. 제 모습 그리면서 보고 싶다 아들 이런 거였죠. 좋았죠. 제 생일을 아버지가 안 까먹으시고 기억해주시고 축하해주시니까.” (사례 E, 남, 18세)

“맨날 편지 보내시거든요. 편지 받은 것만 한 천 번? 진짜 많이 했어요. 맨날 책 보시고 명언 같은 거나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맨날 쓰시고,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어도 넌 여전히 우리 둘째 딸이니까 기죽지 말라고 어디 가서. (중략) (저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요. 엄마 아빠가.” (사례 I, 여, 17세)

2. 현재 부모와의 관계

현재 수감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까웠으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어색해진 사이, 범죄자라는 특성의 이질감 때문에 부모와 거리감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수감 이전부터 주 양육자가 조부모였으며, 아버지에 대해 낱아준 부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반면 수감 후에 더 친밀해졌거나, 수감 후에도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친구같이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한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서신접견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이고, 꾸준한 접견 경험과 노력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1) 부모 자식 사이

“저도 아빠에 대한 정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아빠 같지가 않아요. 그냥 혈육. 그냥 피만 섞인 사이. 네 낱아준 사람” (사례 G, 여, 18세)

2) 어색한 사이

“옛날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색한.” (사례 D, 남, 17세)

“가깝고도 멀죠. 제 스스로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이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빠니까 사랑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범죄자잖아요. 그런 사람인 게 처음에는 되게 이질적이고 제 스스로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랑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하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사례 C, 여, 18세)

3) 친밀한 사이

“친구 같아요. 제가 뭐 고민이 있을 때라던가 그럴 때는 엄마한테 다 털어놓아요” (사례 H, 여, 17세)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엄청 좋아요. 편지 계속 주고받고 있고.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돈독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수감 되시기 전에) 원래 얘기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편지로 안부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례 E, 남, 18세)

“어렸을 때 부터 가족 면회도 하고. 면회도 맨날 가고 편지로 안부도 맨날 묻고. 떨어져 지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략)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아빠랑 교류하는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례 I, 여, 17세)

3. 접견 과정에 바라는 것

1) 만족스러운 만남

(1) 접견 시간의 연장

접견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접견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 비해 접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접견이 오후 4시면 끝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주말에는 전화나 스마트 접견의 예약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례 H, 여, 17세)

“유리로 보는 거는 15분인데. 그러니까 왕복 4시간? 3, 4시간 하는데 15분 볼 거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원래 화상이 20분이었는데 이번에 15분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금방 끝나가지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접견 시간도 늘렸으면” (사례 D, 남, 17세)

“스마트접견도 아침 여덟시부터인가 4시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다 바쁜 시간이어서요. 아침에는 시간이 없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말은 되게 사람들이 빨리 잡아놔가지고 딱 차요.” (사례 A, 남, 16세)

(2)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나고 싶음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멀다. 대부분 여러 교통편을 갈아타며 왕복 서너 시간이 걸려 부모를 만난다. 가까운 곳에서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랐고, 자주 만난다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좀 더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시간 가고 이르는 거 아니고 좀 짧은 거리로 자주 볼 수 있다면 좋죠.” (사례 G, 여, 17세)

“새벽부터 떠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가는 건 좋은데. 네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고속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택시 아니면 버스를 타고 또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사례 H, 여, 17세)

(3) 가족접견실 기회 확대

연구참여자 9명 중 5명이 가족접견실을 이용해보지 못했다.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4~5년 동안 한 번도 부모를 유리벽 없이 만나서 손을 잡거나 안아본 적이 없었으며, 그 중에는 가족접견실을 통해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정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참여자도 있었다. 대부분 가족접견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리벽이 없는 공간에서 부모를 직접 만나기를 희망하였다.

“가족 접견실이 있어요? 만약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E, 남, 18세)

“그냥 (유리)벽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벽이 있어서 좀 아쉽죠.” (사례 E, 남, 18세)

“가족접견실 면회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사례 D, 남, 17세)

(4) 둘만의 접견 기회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형제자매나 양육자 없이 부모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랐다.

“이런 부분은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다’하면서 막 울면서 혼자 갈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또 왔어요. 그리고 편지가 답장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읽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후로는 아빠한테 딱히 속마음을 말한다거나 고민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례 G, 여, 18세)

2) 물리적 환경 변화

(1)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만나는 물리적 환경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고 하였다. 적어도 미성년자 자녀가 방문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몸수색 과정, 부모가 입고 있는 옷, 마이크가 바로 꺼지는 것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고려하여 아동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긴 한데. 들어갈 때 공항 검색대처럼 몸을 수색한 다던지 다 쇠로 되고 누가 봐도 너무 험하고 딱딱한 분위기. 애들 입장에서는 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례 C, 여, 18세)

“적어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옷이라도 다른 거 입고, 좀 애들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받지 않게요.” (사례 D, 남, 17세)

“누가 봐도 ‘여기가 안 좋은 곳이다’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철장이 너무 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돼서 너무 나쁜 곳으로 인식이 박혀버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H, 여, 17세)

3) 예약방식의 변화

(1) 접견 예약 신청 방식의 유연함

스마트접견 신청이 가능한 휴대폰이 아동 자신이 아닌 양육자로 되어있는 경우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스마트접견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녀가 직접 접견 예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접견 예약 신청을 받는 시간대를 확대하거나, 예약 우선권이 주어진다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접견을) 한 달에 네 번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휴대 전화으로 등록해야지 할 수 있어서 할머니 핸드폰으로 보는데 학교 때문에 할머니랑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저는 자주는 못해요)” (사례 B, 남, 18세)

“(예약)하려고 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사례 F, 여, 15세)

“(할머니는 저한테) 계속 접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안 돼요. 타이밍이 계속 시간도 안 맞고,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하라 하고 수업 도중에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짜증내고. 제가 또 전화하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팍 차요.” (사례 A, 남, 16세)

“평일에 6시 전인가 전화해서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제가 학교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도망가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거든요.” (사례 G, 여, 17세)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 및 접견 시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된 만 14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사례 내 및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부모를 접견했을 때 이전의 감정과 관계없이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이 반가웠고 눈물이 났다고 답하였다. 일반접견 시에 공간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가족접견실에서는 부모를 만질 수 있어서 편안하고 시간적 여유로 부모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스마트 접견으로 접견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신접견은 다른 접견과 달리 개인적인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부모의 지속적인 답장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그저 낯아준 사람, 예전에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어색한 사이, 꾸준한 접견을 통한 매우 친밀한 친구 같은 사이라고 범주화되었다.

접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만족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접견 시간의 연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를 자주 만나고 싶음, 가족접견실 기회의 확대, 부모와 단둘이 만나는 기회의 확대로 나타났으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접견 예약 신청 방식의 유연함으로 범주화되었다.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접견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분노와 소외감 감소(Shlafer & Poehlmann, 2010), 자존감 증가(Landreth & Lobaugh, 1998),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Schubert, Duinick & Shlafer, 2016)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견 시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정기적인 접견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은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랐다. 교도소당 가족접견실이 1실인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자녀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접견실 사용이 어렵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일반접견과 스마트접견의 시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가족의 인원수를 감안한 시간 배정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더불어, 동행하는 가족들과 함께 접견하는 것 외에, 자녀가 원할 경우, 부모와 단둘이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허락하여 아동의 사생활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도시와는 거리가 있으며,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수용된 교도소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과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최대한 자녀와 가까운 교정시설에 배정해서 자녀가 원하면 부모를 만날 권리를 누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은 2019년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접견 시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연구참여자가

가족접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9년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중 하나였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 도입 및 부모 접견권 보장’에 관한 권고 사항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법무부 교정보부 차원에서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접견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접견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존엄성과 사생활 권리가 존중되는 접견 환경임을 알리고, 아동이 이런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접견 시의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 몸수색 과정의 간소화, 교도소 외 장소에서의 접견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접견 기준의 유연한 적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평상복차림으로 접견하거나, 일반 접견시 마이크를 통한 대화 중에 마이크가 꺼지는 시간제한에 여유를 줌으로써 아동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접견 환경과 절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부모접견 시 예약 우선권 부여 및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접견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접견 시간이 평일에는 오후 4시로 제한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방학이 아닌 경우에 학교를 결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부터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토요일을 19세 미만 자녀를 위한 ‘아동 접견의 날’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토요일 접견 예약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아동의 학업과 같은 삶의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에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말에도 원활한 접견을 위해서 아동에게 예약 우선권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예약 접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의 부모 면접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경우 당일 접견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가족이 없이 미성년 자녀가 직접 예약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경우, 자녀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접견 예약 신청을 받는 시간대를 확대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 등록 절차 및 스마트 접견 가능 시간의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 스마트접견의 경우, 교도소 등 교정시설 방문의 어려움 및 낙인효과 등을 해소하여 자녀와 수용자 부모와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접견의 사용 가능 시간대가 학생인 아동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시간대이다. 따라서 아동의 경우, 스마트접견 가능 시간을 확대 적용하고,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정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서 스마트접견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스마트접견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아동의 부모 면접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의 접견권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과 하루를 보내는 ‘가족만남의 집’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 중 경험해 본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나 부모와의 친밀한 만남을 희망하는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수용자의 출소 전 배우자, 자녀가 함께하는 귀휴활용 가족문제 솔루션 프로그램(국회입법조사처, 2020)에 대한 추후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만족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 2조에 의해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 의해 모든 아동은 본인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수용자 자녀인 아동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 자녀들의 접견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아동으로서 엄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부모를 만날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접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권리 측면뿐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의 출소 이후의 재범 예방 측면에서도 아동의 부모 접견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자 자녀들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선영,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 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70.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20).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신연희 (2015).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1, 219-249.
- 이경림, 최경옥 (2015). 이 땅에서 수용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비스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0(1), 1-32.
- 이윤희, 김순석 (2008). 수용자와 가족간의 친밀도가 수형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4(2), 105-126.
- 최경옥, 이경림 (2018).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171-206. doi:10.16975/kjfs.2018..62.006
- 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1(3), 1-29.
- Ames, M. G., Go, J., Kaye, J. J., & Spasojevic, M. (2010, February). Making love in the network closet: The benefits and work of family videochat. In *Proceedings of the 2010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145-154). Savannah, GA, USA,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CM).
- Arditti, J. A. (2003). Locked doors and glass walls: Family visiting at a local jail. *Journal of Loss & Trauma*, 8(2), 115-138. doi:10.1080/15325020305864
- Arditti, J. A. (2012). *Parental incarceration and the family.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of imprisonment on children, parents, and care-givers*. New York, NY: NYU Press.
- Beckmeyer, J. J., & Arditti, J. A. (2014). Implications of in-person visits for incarcerated parents'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ing experienc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3(2), 129-151. doi:10.1080/10509674.2013.868390

- Bell, M. F., Bayliss, D. M., Glauert, R., & Ohan, J. L. (2018). Using linked data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vulnerabilities in children of convicte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4*(7), 1219-1231. doi:10.1037/dev0000521
- Booth, N. (2018). Maintaining family ties: The disparities between policy and practice following maternal imprisonment in England and Wales. In L. Gordon (Ed.), *Contemporary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children of prisoners* (pp. 155-171). Newcastle upon Tyne, UK: Cambridge Scholars.
- Clancy, A., & Maguire, M. (2017).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An innovative model of 'whole family' support.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9*(3), 210-230. doi:10.1177/2066220317742634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Dallaire, D., Zeman, J., & Thrash, T. (2015). Differential effects of type of children's contact with their jailed mother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s contact with incarcerated parents* (pp. 23-38). Springer, Cham.
- Davies, Brazell, Vigne, & Shollenberger. (2008).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and Need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 Poehlmann, J., Dallaire, D., Loper, A. B., & Shear, L. D. (2010). Children's contact with their incarcerated parents: Resea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merican Psychologist, 65*(6), 575. doi:10.1037/a0020279
- Poehlmann, J., Shlafer, R. J., Maes, E., & Hanneman, A.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opportunities for maintaining family relationships during maternal incarceration. *Family Relations, 57*(3), 267-280. doi:10.1111/j.1741-3729.2008.00499.x
- Poehlmann-Tynan, J., & Pritzl, K. (2019). Parent-child visits when parents are incarcerated in prison or jail. In *Handbook on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pp. 131-147). Springer, Cham.
- Schubert, E. C., Duininck, M., & Shlafer, R. J. (2016). Visiting mom: A pilot evaluation of a prison-based visiting program serving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minor childre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5*(4), 213-234. doi:10.1080/10509674.2016.1159641

- Shlafer, R. J., & Poehlmann, J. (2010). Attachment and caregiving relationships in families affected by parental incarcera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4), 395-415. doi:10.1080/14616730903417052
- Stake, R. E. (2000).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5 출판)
- Williams, T., & Ivory, D. (April 8, 2020). Chicago's jail is top U.S. hot spot as virus spreads behind bar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4/08/us/coronavirus-cook-county-jailchicago.html>
- Yin, R. K. (2015).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Guilford publications.

〈웹페이지〉

- 법무부 교정본부 (2021). 접견안내. 웹사이트 www.corrections.go.kr 에서 2021년 11월 20일 인출
- (사)세진회 (2021). 세진활동. 웹사이트 <http://www.sejin.org/> 에서 2021년 11월 20일 인출
-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2021). 세움사업. 웹사이트 <http://www.iseum.or.kr/main.php> 에서 2021년 11월 20일 인출
- OHCHR (201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trieved November 20, 2021, from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11.aspx>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ren's contact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impact upon the family relationship*

Lee, Ji Sun**·Cui, Lina***·Han, Kim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arent-child contact in the context of parental incarc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ldren concerned. Data was collect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9 adolescent children of imprisoned parents and the data thus harvested was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erms of their contact with incarcerated parents, our research revealed that the adolescent subjects wanted an extension of interview time, greater access to family visitation rooms, a more child-friendly environment, flexibility in applying for interview reservations, and an expansion of interview opportunities for greater privacy in contact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Based on these results, we present a number of initial recommendations which we believe can improve the quality of children's contact with incarcerated parents.

Key words: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parental incarceration, visitation, parental relationship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Child Welfare Practice SEU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Social Welfare, Handong Glob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luck_17@naver.com)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